

#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27
----------	------

2023년 11월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상욱 의원 외 16명
- 나. 제안일 : 2023년 10월 9일
- 다. 회부일 : 2023년 10월 23일
- 라. 상정일 : 제321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11월 27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욱 의원)

### 가. 주문

-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건의함

### 나. 제안 이유

- 현행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

- 이에 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 및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이 발생함
- 현재 전국 17개 시도는 각 조례에서 청년 나이의 상한 기준을 39세(전남 45세)로 정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지원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건의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4. 이송처

- 대통령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건의안 개요

- 이번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연령 상한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혼선과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을 방지하고,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 연령 정의를 통해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청년기본법」 제3조제

1호에서 정의된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내용

### (1)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

- 청년이 주요 정책대상집단으로 부상<sup>1)</sup>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언론을 중심으로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청년 연령 상한에 대한 상향 조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간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법령 등에 연령기준을 설정하여 범주화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연령에 대한 청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인식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행정 편의적이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며,<sup>2)</sup>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다른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여 청년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힌 바 있음

1) “Ageism is a global challenge: UN”, WHO, 2021.3.18.

2) 청년 연령 범주화, 통상적 인식과 다를 수 있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4.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그러나 '23.10.11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연령 상한이 모두 39세(전라남도 45세)로 상향되었으며,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환경에 따라 청년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sup>3)</sup>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 연령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청년의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청년 연령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연령 상한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39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임<sup>4)</sup>

## (2) 청년 연령 상향의 필요성

- 이처럼 주요 법령에서 명시된 청년 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앙정부차원의 청년 연령 상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청년 연령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3) 40대 이상 청년 연령 상한 사례 : 인천 옹진군 49세, 서울시 도봉구 45세 등

4) [단독] 법정 청년나이 '34세 → 39세'로 상향한다, 뉴스핌, 2023.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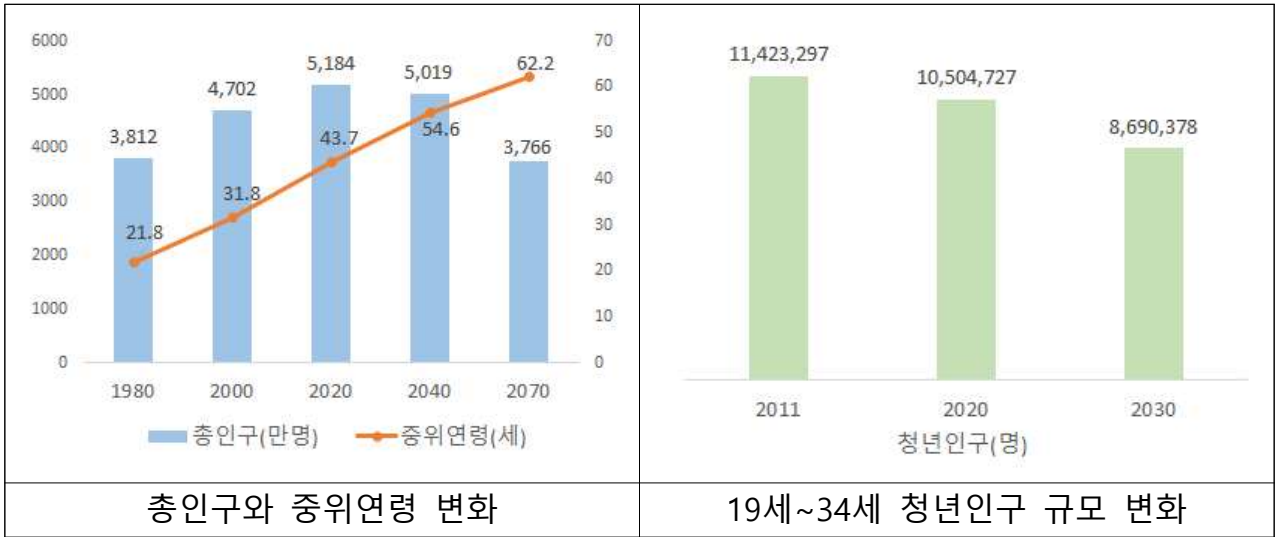
청년 나이 상향 '찬반 논쟁'...정부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검토", 뉴스핌, 2023.10.20.

있다는 점, 청년 연령 불일치로 인한 ‘비일관성’이 정책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볼 때 「청년기본법」에서 정의된 청년 연령 상향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초고령화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 연령정의도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1980년 중위연령은 21.8세였으나 2020년 중위연령은 43.7세로 상향된 반면, 19세~34세 청년인구는 2011년 1,142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주거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청년 연령의 경계점에 있는 연령층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위연령 증가, 청년인구 규모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인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청년 연령정의를 통해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경계점에 있는 연령층의 정책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모색해야 할 것임

##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



자료 : (左)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右)국무조정실, 청년일보 재인용<sup>5)</sup>

### “비일관성’ 개선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 최영훈(2023)<sup>6)</sup>은 최근의 청년 연령에 대한 논쟁은 ‘중첩’, ‘비일관성’, ‘비효율’의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히며, 법제간 및 법제내, 정부간 및 정부내, 중앙지방간 및 지방간 청년 연령의 불일치가 ‘비일관성’ 논쟁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박선권(2021)<sup>7)</sup>은 “한국의 개별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용어와 연령정의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부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정책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와 연령정의의 혼란을 지양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입법 및 정책과제임을 강조하였음

5) [청년연령상향 (上)]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거세지는 청년연령확대 요구, 청년일보, 2023.5.14.

6) 최영훈. (2021). "청년연령에 대한 경쟁관점과 새로운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1호(2023.3): 29~45

7) 박선권. (2021).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NARS 현안 분석. 제222호(2021.11). 국회입법조사처.

- 따라서,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연령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일관성’은 정책 ‘비효율’을 야기하므로, 정책투자의 효과적인 측정과 성과 관리는 물론 정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위 법령과 조례 간 청년 연령정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다. 종합 의견

- 청년이 주요 정책대상집단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청년 연령 상한에 대한 조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행정 편의적이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년 연령 상향 계획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위연령 증가, 청년인구 규모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청년 연령 상향을 통해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경계점에 있는 연령층의 정책 소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관련 법령 별로 상이한 청년 연령정의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입법·정책과제임을 고려할 때, ‘비일관성’ 개선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법 개정에 따른 청년 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 연령 상향 개정으로 인해 정책수혜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관련 지원 정책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므로, 재정 계획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청년 연

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락**

**7. 토    론    요    지: 없            음**

**8. 심    사    결    과: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붙임 1**

**청년의 연령 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

구분	법령	연령기준	법령조항
정부 법규	청년기본법	19세 ~ 34세 이하	제3조제1항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세 ~ 29세 이하	제2조 제1항(2021.7.6.)
		15세 ~ 34세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 (제5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중소기업기본법	19세 ~ 34세 이하	제2조(2022.12.1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세이하	제2조(2022.1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5세 ~ 34세 이하	제12조(2021.10.21.)
	고용보험시행령	15세 ~ 34세 이하	부칙 제3조(2021.7.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18세 ~ 45세 이하	홈페이지(위원공모안내) 시행령 제4조(2019.7.30.)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 특별법	39세 이하	시행령 제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15세 ~ 34세 이하	시행령 제27조
	공공주택 특별법	19세 ~ 39세 이하	시행규칙 별표6의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9세 ~ 34세 이하	제1조(2022.12.1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40세 미만	시행령 제3조(2021.5.18.)
자치 법규 (시도)	서울특별시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1.9.30.)
	부산광역시	18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3..7.5.)
	대구광역시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0.10.5.)
	인천광역시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1.6.4.)
	광주광역시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1.2.25)
	대전광역시	18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1.7.30)
	울산광역시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3.5.18)
	세종특별자치시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2.11.14)
	경기도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3.10.11)
	강원도	18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0.3.6)
	충청북도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1.7.1)
	충청남도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1.12.30)
	전라북도	18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1.5.28)
	전라남도	18세 ~ 45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3.4.27.)
	경상북도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1.4.1.)
	경상남도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2.12.19.)
제주특별자치도	19세 ~ 39세 이하	청년기본조례(2020.8.12.)	

※ 정부법규('22.12월 기준), 자치법규('23.11월 기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2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09일

발 의 자: 이상욱,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종길,  
김혜지, 서상열, 송경택,  
윤영희, 이민석, 이은림,  
이희원,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진혁 의원(17명)

## 1. 주문

-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현행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
- 이에 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 및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이 발생함.
- 현재 전국 17개 시도는 각 조례에서 청년 나이의 상한 기준을 39세(전남 45세)로 정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지원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건의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4. 이송처

○ 대통령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 9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17개 시도의 청년 나이 상한이 모두 39세(전남 45세)로 상향되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23년 기준 18.4%로 나타나는 바, 이미 고령사회로 분류되며 2025년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지원책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에서 청년 나이의 법적 재정의가 더욱 요구받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확대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111)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청년 나이 상한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청년’이라는 단어에  
매여 시대의 변화와 사회 현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변화와 흐름에 따라  
청년의 정의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청년 나이 상한이 39세로 상향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3.9.2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